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328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8. 22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
가. C과 피고 사이의 2023. 2. 16.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주장은 별지 ‘변경된 청구원인’ 기재와 같고,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D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,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(피고는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,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)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오승이

별지